



#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의 기대효과

김규동 연구위원

최근 시행된 “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”은 교통환경 및 국내 법규 변화와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보다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기준으로 평가됨. 개선안에는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방 과실 사례들이 다수 포함됨.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과실비율 산정과 ‘과실비율 인정기준’의 괴리가 해소되고,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. 또한,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간 사고나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가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 되어, 소비자 편익 제고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됨

## ■ ‘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’(이하, ‘과실비율 인정기준’) 개정안이 5월 30일에 시행되었음<sup>1)</sup>

-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자동차사고 보상 및 구상 업무 시 일관성, 안정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1976년 처음 제정된 이후 이번까지 총 8번의 개정을 거쳤음
- 이번 개정안은 가해자 책임성 강화, 교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과실비율 기준 신설·변경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를 통해, 과거에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것으로 평가됨
  - 54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고 19개 과실비율 기준을 변경하는 등 자동차사고 유형을 기존 250개 도표에서 301개 도표로 변경하였으며, 교통관련 법규 및 판례 등에 부합하도록 ‘과실비율 인정기준’을 개정함<sup>2)</sup>
- 또한,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 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에 대해서도 손해보험협회 내에 설치된 ‘과실비율 분쟁심의 위원회’를 통해 분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<sup>3)</sup>

1)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·손해보험협회 보도자료(2019. 5. 27), “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-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”  
 2) 33개 도표의 신설 및 변경을 통해 일방과실 인정기준을 추가함  
 3) 2019년 4월 18일 이전에는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 간 자동차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는 ‘과실비율 분쟁 심의 위원회’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이 가능했었음

■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피해자의 불이익 감소, 자동차사고 감소, 소비자 중심의 분쟁 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보험회사의 신뢰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

- 피해자가 방어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일방과실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, 그동안 피해자가 받았던 과실비율상 불이익이 줄어들고,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-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신설·변경으로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확대된 것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 것임
  - 과거에는 비교적 관대하게 인식되었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, 무리한 차선 바꾸기 및 앞지르기 등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줄어들고 부분적으로 자동차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손해보험협회를 통한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한 것은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소비자 편익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음
  -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 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를 분쟁조정기구를 통한 분쟁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은 소비자보다는 보험회사 중심의 분쟁조정 관행이었다고 볼 수 있음<sup>4)</sup>
  - 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제도가 정착되면 과실비율에 대한 소송 빈도가 줄어들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임
- 또한,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 증대를 위해 일방과실 사고를 쌍방과실 사고로 처리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실추되었던 보험회사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  - 보험료 인상·인하는 손해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므로, 쌍방과실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례가 증가하여도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평균적으로는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보험수리적 해석임

■ 다만 가해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일방과실 판단 기준이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회피하지 못한 책임은 물을 수 있으므로 방어운전의 중요성은 감소하지 않을 것임

- 가해자의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해 자동차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여전히 주의 의무가 요구되므로, 피해자에게 사고 회피 여지가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일방과실이 인정되는 것임<sup>5)</sup>
  -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는지,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, 가해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피해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님
  - ‘과실비율 인정기준’ 개선안에서 가해자 일방과실 사례와 유사한 사고라고 하더라도, 피해자가 시간·공간적으로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면책되지 않을 것임 **kiri**

4)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 간 사고인 경우,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보험회사가 부담해야할 책임은 동일함

5) 과실상계란,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, 당사자의 과실의 정도,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되었는지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(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1다58269 판결)